

산하 위원회를 통한 적극적 대처 노력

국내 정보통신사업은 지난 2월 세계 67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WTO기본통신그룹의 각국 양허안을 서명함에 따라 본격적인 경쟁환경에 돌입하게 됐다. 이에 세계각국은 통신시장 개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전기통신 관련법을 대폭 개정하는 등 자국 정보통신사업의 경쟁력을 강화코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왔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정부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별정통신사업자 제도 신설등을 추진했다. 또한 정보통신사업의 조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신규 기간통신사업자를 추가 선정했으며 전기통신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키 위해 상호접속, 설비제공, 정보제공, 공동이용 등과 관련된 고시 기준의 개정이 지속적으로 정비됐다.

급변하는 정보통신 사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우리협회는 정부의 정보통신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키 위해 협회 산하 위원회를 적극 활용했다. 특히 수차례에 걸친 부가통신사업위원회 실무자 회의를 통해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등록요건(자본금, 설비규모, 기술수준)을 수립해 「별정통신사업자 제도 개정방향 검토의견」을 정부에 제출했었다.

당시 별정통신사업자 제도는 새로운 수요창출을 유발해 정보통신사업의 활성화를 급진전시킬 것으로 전망돼 부가통신사업자를 비롯하여 기간통신사업자는 물론 정보통신사업에 진입하지 않았던 타 업종 관련 민간업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후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협회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자본금 30억원, 기술인력 통신분야 기술계 자격자 3인과 기능계 자격자 2인(이상 설비보유재판매사업의 경우)등의 진입요건을 최소화시켰으며 1998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당시 협회는 민간 부가통신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

를 통한 정보통신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기준(자본금 20억원, 기술수준 유선설비 및 교환설비 관련 자격증 소지자 1명 이상 등)을 최소화시켜 진입요건을 대폭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1998년부터 사업이 가능한 별정통신사업은 음성재판매사업, 인터넷폰사업, 국제콜백전화사업, 구내통신사업등이다. 이밖에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코자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 기준 개정작업에도 참여를 해 접속회선 방식의 원칙을 중계회선 방식으로 하고 접속회선 비용도 접속사업자가 각각 1/2씩 부담키로 하는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도 했다. 동 기준은 1997년 12월중 개정되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014XY 데이터망 활성화 기반을 조성키 위해 정부가 추진한 014XY 데이터망 식별번호의 부여조건 완화방안수립 전담팀에 참여해 부가통신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행 전국 도단위 9개 이상 노드(E1급 이상 중계회선)설치 의무 규정을 전국 6개 도단위 노드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와같이 우리협회는 지난 한해동안 기본통신분야의 통신 개방에 따른 경쟁환경의 조성 및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제 다가올 1998년은 1999년부터 본격화될 통신시장 개방에 대응해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협회는 별정통신사업을 비롯하여 신규 기간통신사업의 조기 사업기반 구축을 위한 수요창출·촉진 및 사업자간 협력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자간 적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상호접속, 설비제공, 공동이용, 정보제공 등과 관련된 대가산정 등 요금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개선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조영훈 제도개선과장> ❶